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


[시행 2025. 2. 25.] [기획재정부령 제1104호, 2025. 2. 25., 일부개정]

통계청 (혁신행정담당관) 042-481-2048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·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, 「정부조직법」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「통계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5. 5. 6.]

제2장 통계청 <개정 2005. 5. 6.>

제1조의2(차장)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. 24.>

[본조신설 2006. 8. 3.]

[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<2006. 8. 3.>]

제1조의3(대변인) 대변인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8. 30.> [전문개정 2013. 3. 23.]

- 제1조의4(기획조정관)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. <개정 2008. 12. 31.>
 -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·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,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09. 11. 19., 2012. 6. 28., 2013. 3. 23., 2013. 9. 26., 2017. 9. 1., 2017. 12. 26., 2020. 2. 25., 2021. 7. 1., 2022. 2. 28., 2023. 8. 30.>
 -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<개정 2020. 2. 25., 2023. 12. 12.>
 - 1. 주요 정책과제의 종합 조정 및 관리
 - 2.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
 - 3.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
 - 4.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
 - 5. 정기 임시국회 대응 및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
 - 6. 국정감사 수감 및 보고자료 작성
 - 7. 국정협력 및 정책연구 등 총괄 운영
 - 8. 국정운영ㆍ시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
 - 9.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및 총괄・조정
 - 10.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
 - 11.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
 - 12.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 -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<개정 2009. 11. 19., 2009. 12. 31., 2013. 9. 26., 2017. 9. 1., 2018. 3. 30., 2020. 2. 25.>
 - 1. 청내 창의혁신 기획업무의 총괄 지원
 - 2.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청내 행정개선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
- 4.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
- 5.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집행
- 6. 민원(국민제안을 포함한다)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
- 7. 법령안 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
- 8. 법령질의・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・발간
- 9. 통계조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
- 10. 삭제 < 2011. 6. 9.>
- 11. 정부혁신 과제의 발굴 선정, 추진상황 확인 점검 및 성과관리
- 12. 청내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, 단체 등과의 협업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
- 13.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
-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<개정 2021. 7. 1., 2022. 2. 28., 2023. 3. 28., 2023. 12. 12.>
- 1.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
- 2. 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(ODA)에 관한 사항
- 3. 국제통계연수 지원 및 통계교육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
- 4. 해외파견관 등 인적교류 업무 지원
- 5. 국제통계협력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
- 6.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・관리
- 7. 간행물 외 국제통계자료의 수집
- 8. 북한 통계에 관한 사항
- 9. 아주지역 통계에 관한 사항
- ⑥ 삭제<2022. 2. 28.>
- ⑦ 삭제<2020. 2. 25.>
- [전문개정 2008. 3. 3.]
- **제1조의5(감사담당관)**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8. 30.> [전문개정 2012. 6. 28.]
- **제1조의6(운영지원과)**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8. 30.> [전문개정 2012. 6. 28.]
- **제2조(통계정책국)** ①통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05. 5. 6., 2005. 7. 1., 2005. 8. 2., 2006. 8. 3., 2008. 12. 31.>
 - ②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・경제통계심사조정과・사회통계심사조정과・통계기준과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・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05. 8. 2., 2006. 8. 3., 2007. 5. 3., 2007. 12. 3., 2008. 3. 3., 2009. 11. 19., 2011. 6. 9., 2012. 6. 28., 2013. 3. 23., 2013. 9. 26., 2015. 10. 1., 2020. 2. 25., 2023. 2. 6., 2023. 8. 30.>
 - ③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05. 7. 1., 2005. 8. 2., 2007. 5. 3., 2007. 12. 3.,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5. 10. 1., 2022. 2. 28.>
 - 1.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
 - 2. 국가통계제도의 운영
 - 2의2.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3. 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그 밖의 통계정책관련 업무의 총괄
- 5. 통계책임관제도의 운영 및 지원
- 6. 통계협의체의 운영 및 지원
- 7. 통계청장 주관에 속하는 민간비영리단체관련 업무
- 8. 삭제 < 2024. 3. 26.>
- 9. 삭제 < 2024. 3. 26.>
- 10. 삭제 < 2024. 3. 26.>
- 11.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④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통계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2.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
- 3. 경제 분야 통계 작성의 승인
- 4.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
- 5.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활동 현황 파악 및 평가
- 6.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
- 7.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
- 8.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
- 9.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10.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
- 11. 삭제 < 2024. 3. 26.>
- ⑤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통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2.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
- 3. 사회 분야 통계작성의 승인
- 4.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
- 5.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활동 현황 파악 및 평가
- 6.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
- 7.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
- 8.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
- 9.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10.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
- ⑥ 통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
- 2. 통계용어의 정비 및 보급
- 3.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각종 경제분류 제정・개정 및 활용지원
- 4.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각종 사회분류 제정・개정 및 활용 지원
- 5.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 각종 보건분류 제정・개정 및 활용 지원
- ⑦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11. 6. 9., 2013. 3. 23.>
- 1. 국가통계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
- 2. 국가통계 품질평가제도의 운영
- 3. 통계품질평가 및 관리기법 개선
- 4. 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
- 5. 통계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

- 6. 자체 통계품질진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⑧ 삭제<2015. 10. 1.>
- 9 삭제<2006. 8. 3.>

[제목개정 2005. 5. 6., 2005. 8. 2.]

- 제2조의2(통계데이터허브국) ①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. 5.>
 - ②「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계서비스정 책관으로 하며, 통계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.<신설 2021, 1, 5,>
 - ③ 통계서비스정책관은「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5호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<신설 2021. 1. 5.>
 - ④ 통계데이터허브국에 통계데이터기획과, 행정자료관리과, 통계등록부과, 행정통계과, 빅데이터통계과, 마이크로데이터과, 통계서비스기획과, 조사시스템관리과, 공간정보서비스과 및 지능정보화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20. 2. 25., 2021. 1. 5., 2023. 2. 6., 2023. 8. 30.>
 - ⑤ 통계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1. 2. 25., 2022. 2. 28., 2023. 2. 6.>
 - 1. 통계데이터 구축・관리・활용에 관한 기획 및 추진
 - 2. 통계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정비
 - 3. 행정자료 활용 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청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
 - 5.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・추진 및 평가 등 총괄
 - 6.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
 - 7.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 - ⑥ 행정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1. 1. 5., 2023. 2. 6.>
 - 1. 행정자료 활용의 기획 및 운영 총괄
 - 2. 행정자료 입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
 - 3.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
 - 4. 행정자료 관리시스템의 개발·운영 및 유지·관리
 - ⑦ 통계등록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 - 1. 통계등록부의 기획 및 구축
 - 2. 통계등록부의 연계 및 활용
 - ⑧ 행정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 - 1.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개발
 - 2. 행정통계의 작성 및 분석
 - ⑨ 빅데이터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 - 1.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2. 통계생산을 위한 빅데이터의 입수 정비 및 관리
 - 3.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
 - 4.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
 - ⑩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, 2023. 12. 12.>
 - 1.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
 - 2.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 관리 및 제공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
- 4. 통계작성기관과의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에 관한 협력
- 5. 통계작성 및 연구・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・운영
- ⑪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
- 2.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
- 3.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
- 4. 국가통계포털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
- 5. 지식정보 콘텐츠의 기획 및 제공
- 6.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
- 7.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
- 8. 국제통계 및 기획통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
- 9.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10. 청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
- ②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통계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
- 2. 최신 전산개발기법의 도입 및 활용
- 3. 통계데이터베이스 수록자료 생성시스템의 개발
- 4. 통계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
- 5. 통계조사 공동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
- ③ 공간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공간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
- 2. 통계조사 대상의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
- 3. 통계조사용 지도 제작 및 통계구(統計區) 설정
- 4. 공간정보서비스
- 5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정보에 관한 협력
- ㈜ 지능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23. 2. 6.>
- 1.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
- 2.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 관리
- 3. 청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4. 정보화 용역사업의 종합관리 및 품질관리
- 5.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
- 6. 업무포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
- 7. 행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
- 8. 통계청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

[전문개정 2015. 10. 1.]

- **제3조(경제통계국)** ①경제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05. 5. 6., 2005. 7. 1., 2006. 8. 3., 2008. 12. 31., 2019. 7. 16., 2021. 1. 5.>
 - ②「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제8조제1항에 따라 경제통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으로 하며,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<신설 2021. 1. 5.>
 - ③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「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제8조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,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, 제16호, 제17호, 제20호, 제21호 및 제2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<신설 2021. 1. 5.>

- ④ 경제통계국에 경제통계기획과・소득통계과・경제총조사과・산업통계과・산업동향과・서비스업동향과・물가 동향과 및 기업통계팀을 두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・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・서 기관・전산사무관・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23. 2. 6., 2023. 8. 30.>
- ⑤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9. 7. 16., 2021. 1. 5., 2021. 2. 25., 2023. 2. 6., 2023. 12. 12.>
- 1. 경제통계 전반의 개선 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
- 2. 지역산업연관표 개발 및 관련 조사 수행
- 3. 국민계정의 양적 보완지표 작성 및 분석
- 4. 삭제 < 2023. 2. 6.>
- 5.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- ⑥ 소득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, 2023. 12. 12.>
- 1. 지역소득계정의 추계 및 분석
- 2.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 및 분석
- 3. 지역소득계정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
- 4. 지역경제동향 작성 및 지역 경제 분석
- 5.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 추계를 위한 조사 수행
- 6. 지역소득계정의 시의성 개선
- 7.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사항
- ⑦ 경제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전국사업체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2. 경제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®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광업ㆍ제조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2.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3.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4.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5. 체인사업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6. 그 밖에 산업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
- ⑨ 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산업활동동향의 분석
- 2. 광업 제조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3. 기계수주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4.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5. 생산・출하・재고, 생산능력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
- 6. 설비투자지수의 작성 및 분석
- 7. 전(全)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
- 8.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
- 9.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
- ⑩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2.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
- 3.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

- 4.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
- 5. 그 밖에 서비스업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
- ① 물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소비자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2.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
- 3. 국제구매력평가 관련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4. 그 밖에 물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
- ② 기업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2. 기업생멸(生滅)통계의 작성 및 분석
- 3.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의 작성 및 분석
- 4.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
- 5. 그 밖에 기업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

[제목개정 2005. 5. 6.]

- **제4조(사회통계국)** ①사회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05. 5. 6., 2005. 7. 1., 2006. 8. 3., 2008. 12. 31.>
 - ② 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・인구동향과・고용통계과・가계수지동향과・복지통계과・농어업통계과・농어 업동향과 및 인구추계팀을 두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・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・서기관・전산사무관・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24. 3. 26.>
 - ③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09. 12. 31., 2011. 6. 9., 2013. 1. 18., 2013. 9. 26., 2015. 5. 26., 2017. 9. 1., 2021. 2. 25., 2024. 3. 26.>
 - 1. 사회통계 전반의 개선 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
 - 2. 삭제 < 2021. 2. 25.>
 - 3. 사회조사의 기획 및 실시
 - 4. 사회지표 체계의 수립 및 작성
 - 5. 사회통계 정책대상별 종합・분석 자료의 작성
 - 5의2.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
 - 5의3. 육아휴직 통계의 기획 및 작성
 - 5의4. 삭제 < 2019. 12. 31.>
 - 6.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 - ④인구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05. 7. 1,, 2007. 12. 3,, 2009. 11. 19,, 2024. 3. 26.>
 - 1. 출생, 사망, 혼인, 이혼 등의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
 - 2. 사망원인통계의 작성 및 분석
 - 3. 삭제 < 2004. 3. 4.>
 - 4. 삭제 < 2024. 3. 26.>
 - 5. 삭제 < 2024. 3. 26.>
 - 6. 생명표 작성
 - 7. 삭제 < 2024. 3. 26.>
 - 8.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
 - 9. 그 밖에 인구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
 - ⑤ 고용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08. 3. 3., 2009. 11. 19., 2009. 12. 31., 2013. 9. 26., 2017. 9. 1.>
 - 1.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

- 2.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3. 지역별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4. 고용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
- 5. 고용구조 관련 통계의 작성
- 5의2.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6. 그 밖에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
- ⑥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19. 7. 16.>
- 1.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2. 그 밖에 가계수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
- ⑦ 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9. 7. 16., 2019. 12. 31.>
- 1.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2. 소득분배통계의 작성
- 3. 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4. 그 밖에 가계복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
- ⑧ 농어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09. 11. 19., 2009. 12. 31., 2011. 6. 9., 2017. 2. 28., 2019. 7. 16.>
- 1.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2. 삭제 < 2017. 2. 28.>
- 3.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4.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5.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6. 삭제 < 2017. 2. 28.>
- 7. 삭제 < 2017. 2. 28.>
- 8. 삭제 < 2017. 2. 28.>
- ⑨ 농어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17. 2. 28., 2019. 7. 16.>
- 1. 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2.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3.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4.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5.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6. 농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7.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8.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9. 산지쌀값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⑩ 인구추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24. 3. 26.>
- 1. 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
- 2.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
- 3. 시・군・구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
- 4.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
- 5. 그 밖에 인구이동통계 및 인구추계에 관한 사항

[제목개정 2005. 5. 6.]

제5조(조사관리국) ① 조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 · 인구총조사과 · 표본과 · 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을 두며, 각 과장 및 센터 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전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24. 3. 26.>
-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2. 2. 28,, 2023. 2. 6,, 2024. 3. 26.>
- 1. 삭제 < 2017. 2. 28.>
- 2. 삭제 < 2017. 2. 28.>
- 3. 삭제 < 2017. 2. 28.>
- 4. 지방통계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통계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6. 통계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
- 7. 통계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8. 통계조사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
- 9. 통계조사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10. 조사대상처에 대한 홍보
- 11. 통계조사 검증에 관한 사항
- 11의2. 국가통계 조사・작성 등의 대행(이하 이 항에서 "국가통계대행"이라 한다)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
- 11의3.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조정 및 협력
- 11의4.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수주 및 관리
- 11의5. 국가통계대행과 관련된 현장조사의 관리
- 11의6. 국가통계대행 결과의 제공
- 12.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· 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④ 삭제<2022. 2. 28.>
- ⑤ 인구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7. 2. 28.>
- 1. 인구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2. 주택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
- 3. 인구·주택총조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
- 4. 인구 및 주택의 규모・구조・분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
- 5. 인구・주택총조사 관련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
- 6. 삭제 < 2017. 2. 28.>
- 7. 삭제 < 2017. 2. 28.>
- ⑥ 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2. 2. 28.>
- 1. 국가통계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
- 2. 국가통계의 표본관리에 관한 사항
- 3. 표본설계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연동표본에 관한 사항
- 5. 표본 관련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⑦ 스마트조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2. 6.>
- 1. 스마트조사의 총괄・기획・조정에 관한 사항
- 2. 스마트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
- 3. 스마트조사 결과의 분석 검토
- 4. 스마트조사의 표본 관리와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스마트조사에 관한 사항
- ⑧ 지역통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24. 3. 26.>

- 1.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.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- 3.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
- 4.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15. 10. 1.]

제3장 통계인재개발원 <개정 2025. 2. 25.>

제6조(통계인재개발원) ①통계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05. 5. 6., 2005. 7. 1., 2006. 8. 3., 2008. 12. 31., 2025. 2. 25.>

- ②통계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05. 5. 6., 2007. 5. 3., 2009. 11. 19., 2012. 6. 28., 2023. 8. 30., 2025. 2. 25.>
-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07. 12. 3., 2017. 2. 28., 2023. 3. 28.>
- 1.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. 외국인 통계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기획 및 운영
- 3. 보안 및 관인관리와 인사
- 4. 예산・결산・회계・용도 및 국유재산관리
- 5. 비상계획과 청사・기숙사・후생시설관리
- 6. 교육홍보 및 대외업무
- 7. 통계교육을 통한 통계이용 활성화
- 8.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④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07. 12. 3.>
- 1. 교육운영 계획수립 및 실적평가
- 2. 업무혁신관련 교육과정의 운영
- 3. 통계전문교육과정 운영
- 4. 정보화교육과정 운영
- 5. 강사선임, 교육생 선발 등록 및 학적관리
- 6. 교재의 편찬 및 발간
- 7. 그 밖에 통계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05. 1. 7.]

[제목개정 2025. 2. 25.]

제3장의2 삭제 <2021. 12. 31.>

제6조의2 삭제 <2021, 12, 31.>

제4장 지방통계관서 <개정 2021. 12. 31.>

제7조(관할구역 등) ① 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통계청에 두는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・위치・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.

[전문개정 2021, 12, 31.]

제8조(지방통계청) ① 경인지방통계청장, 동북지방통계청장 및 호남지방방통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, 그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동남지방통계청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충청지방통계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다만, 충청지방통계청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<개정 2025. 2. 25.>
- ③ 지방통계청에 조사지원과, 지역통계과, 경제조사과, 사회조사과 및 농어업조사과(경인지방통계청은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를 둔다)를 두며,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.<개정 2023. 8. 30., 2024. 7. 1., 2025. 2. 25.>
- 1. 조사지원과장: 경인지방통계청, 동북지방통계청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동남지 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・서기관・전산사무관・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.
- 2. 지역통계과장: 경인지방통계청, 동북지방통계청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동남지 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, 충청지방통계청은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.
- 3. 경제조사과장: 경인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동북지방통계청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과학 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,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공업 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.
- 4. 사회조사과장: 경인지방통계청, 동북지방통계청, 호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, 동남지방통계청은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.
- 5. 농어업조사과장 : 호남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, 동북지방통계청,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.
- 6.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: 과학기술서기관・서기관・전산사무관・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.
- 7.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,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·사회조사과장,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및 경제조사과장은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 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.
- ④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- 1. 보안 관인관리와 인사 등에 관한 사항
- 2. 예산・결산・회계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
- 3.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4.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
- 5. 통계도서관 등 관할 기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6.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
- 7. 지방청(사무소를 포함한다)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의 수행
- 8. 반부패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수행
- 9. 현장조사 확인 점검 등 조사점검 업무의 수행
- 10. 교차 감사 및 자체감사의 인력 지원
- 11. 그 밖에 홍보활동 및 지방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- ⑤ 지역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- 1.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
- 2. 관할 시・군・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4.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
- 5. 관할 지역통계의 수요조사 및 신규통계 발굴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지역통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⑥ 경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2. 2. 28.>
- 1.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
- 2. 경제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
- 3. 경제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
- 4.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5.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
- 6.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,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7.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
- 8. 경제 관련 통계조사 자료・보고서 등의 작성・배포
- 9. 경제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 개발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경제 관련 통계조사・분석 등에 관한 사항
- ⑦ 사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2. 2. 28.>
- 1.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
- 2. 사회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
- 3. 사회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
- 4.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5.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
- 6.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,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7.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
- 8. 사회 관련 통계조사 자료・보고서 등의 작성・배포
- 9. 사회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 개발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사회 관련 통계조사・분석 등에 관한 사항
- ⑧ 농어업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2. 2. 28.>
- 1.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
- 2.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
- 3.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
- 4.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5.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
- 6.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,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7.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
- 8.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 자료・보고서 등의 작성・배포
- 9.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 개발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 분석 등에 관한 사항
- ⑨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2. 2. 28.>
- 1. 농어업 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
- 2. 농어업・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
- 3. 농어업・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
- 4. 농어업・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5. 농어업 · 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
- 6. 농어업・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,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7. 농어업 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
- 8. 농어업・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자료・보고서 등의 작성・배포
- 9. 농어업 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 개발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농어업·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·분석 등에 관한 사항 [전문개정 2021. 12. 31.]

- 제9조(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) ①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 다만, 서울사무소장·인천사무소장·수원사무소장·안동사무소장·목포사무소장·전주사무소장·제주사무소장 및 울산사무소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8. 30.>
 - ② 강원지방통계지청에 지역통계과, 경제사회조사과, 농어업조사과를 두며,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23. 8. 30.>
 - ③ 지역통계과장은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<개정 2024. 3. 26.>
 - ④ 경제사회조사과장은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4. 3. 26.>
 - ⑤ 농어업조사과장은 제8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4. 3. 26.>
 - ⑥ 지방통계지청장 및 사무소장은 지방통계청장(원주사무소장, 강릉사무소장 및 영월사무소장의 경우에는 강원지 방통계지청장을 말한다)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・감독한다.

[전문개정 2021. 12. 31.]

제4장의2 국가통계연구원 <개정 2025. 2. 25.>

제9조의2(국가통계연구원) 국가통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고,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25. 2. 25.>

[본조신설 2021. 12. 31.] [제목개정 2025. 2. 25.]

제9조의3 삭제 <2005. 12. 30.>

제9조의4 삭제 <2005. 12. 30.>

제5장 공무원의 정원

제10조(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「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. <개정 2007. 12. 3., 2015. 10. 1., 2017. 12. 26., 2018. 3. 30., 2021. 1. 5., 2021. 7. 1., 2022. 2. 28., 2022. 12. 30., 2023. 7. 3., 2023. 8. 30., 2024. 3. 26.>

②통계청장은 별표 3의 통계청공무원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(4급 또는 5급 2명)과 그 밖의 정원중 34명 (4급 3명, 5급 9명, 6급 15명, 7급 4명, 8급 3명)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<신설 1999. 5. 24., 2004. 3. 4., 2005. 1. 7., 2005. 5. 6., 2005. 7. 1., 2007. 5. 3., 2013. 3. 23., 2013. 12. 12., 2021. 12. 31., 2023. 8. 30.>

제10조의2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)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24조제3항 및「공무원임용 령」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 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0. 7. 21.]

제10조의3 삭제 <2016. 5. 10.>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1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통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1. 12.

31., 2025, 2, 25.>

- ② 지방통계청·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「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.<신설 2021. 12. 31., 2022. 12. 30., 2023. 8. 30.>
- ③ 국가통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3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<신설 2021. 12. 31., 2025. 2. 25.>

[전문개정 2005. 12. 30.] [제목개정 2021. 12. 31.]

제11조의2 삭제 <2021. 12. 31.>

제12조 삭제 <2021. 12. 31.>

제13조 삭제 <2023. 8. 30.>

제6장 삭제 <2025. 2. 25.>

제14조 삭제 <2025. 2. 25.>

제7장 삭제 <2022. 12. 30.>

제15조 삭제 <2022. 12. 30.>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